공고 제 7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01월 17일

운정3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윤 *조	윤 *삭 2018-12-20	경기도 파주시 미래로310번길 (동패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1-17